

2022년 4월호

# 글로벌 에너지 동향 이슈 보고서

글로벌 에너지 산업 및 정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주제를 선정하여  
매월 동향 이슈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Green Taxonomy)

## < 목 차 >

|                                  |    |
|----------------------------------|----|
| I. 녹색분류체계 (Green Taxonomy) ..... | 3  |
| II. 해외 녹색분류체계 동향 .....           | 7  |
| III.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            | 15 |
| IV. 관련 주요뉴스 .....                | 18 |

## Highlight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친환경 경제활동인지에 대해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주요국은 각국 상황에 맞게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구분할 수 있는 EU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확정하고 EU의회 및 이사회에 발의했습니다. 최종안은 4-6개월에 걸쳐 EU의회와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27개 회원국 중 20국 이상이거나 EU의회의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는 한 그대로 확정되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U Taxonomy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기준과 함께 산업별 친환경 경제활동을 제시함으로써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자금이 친환경 경제활동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기반 조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최종안에는 수립 전부터 논쟁이 뜨거웠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 관련 경제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원전과 천연가스가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라는 것에는 여전히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며,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EU의 녹색분류체계인 EU Taxonomy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I.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 1. 녹색분류체계 개요

### □ 정의

-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들을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을 식별함
-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린워싱<sup>1)</sup>을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함

### □ 등장배경

-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각국 상황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EU,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을 목표 설정
- OECD에 따르면 파리협정 목표<sup>2)</sup>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간 6조 3500억 유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 부문 재원뿐만 아니라 기관 및 민간 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 과정에서 금융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친환경 경제활동에 관한 명확한 정의 및 분류 기준이 부족한 상황
- 온실가스 감축을 유발하고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이 필수적임

### □ 녹색분류체계의 활용

- 세계은행에 따르면, 녹색 금융 분류체계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 투자자, 금융감독기관 등 자본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속가능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함
  -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활동의 선별기준을 제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별기준을 충족하는데 기여할 자본과 지출의 파악 및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을 포함

1)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함

2) 파리협정 목표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C 이내, 더 나아가 1.5°C 이내로 줄이는 것

【 녹색 금융 분류체계 용도 】

| 구분               | 용도  |
|------------------|---|
| 은행 및 금융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 금융상품(대출, 신용, 보증 등) 확대</li> <li>- 녹색 대출 및 지원 운영 효율성 제고</li> <li>- 평가 대상 자산에 대한 신속한 검증을 통한 거래비용 하락</li> <li>- 불확실성 및 평판 리스크 감소</li> <li>-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지속가능 투자 관련 공시</li> </ul>                   |
| 금융 감독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활동을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li> <li>1. 은행의 녹색기업 대출 장려를 위한 규제 지원</li> <li>2.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및 공시를 위한 신규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기존 가이드라인 개선</li> <li>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 흐름 측정</li> <li>4. 그린워싱 방지를 통한 평판 리스크 헷징</li> </ul> |
| 투자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팩트 투자를 위한 지속가능성 기준에 맞는 기회 식별</li> <li>-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지속가능 투자 공시</li> <li>- 녹색투자 포트폴리오 공개의 이해</li> </ul>   |
| 녹색채권 발행자 및 이해관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조달을 보다 용이하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경제활동 식별</li> </ul>   |
| 정책입안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가 부족한 분야 자금 조달</li> <li>-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녹색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개발 증진</li> <li>- 국가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참고 자료 활용 및 금융 흐름의 측정과 추적 시스템 개선</li> </ul>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제정 및 상품 개발의 기준점 마련</li> </ul>   |

※ 자료: 세계은행 (2020)

## II. 해외 녹색분류체계 동향

### 1.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제도

□ 지속가능금융제도 개요

-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되기 전에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sup>3)</sup>의 녹색채권원칙 (Green Bond Principle),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sup>4)</sup>의 기후채권기준 등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해당 프로젝트 목적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을 분류함
  -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친환경적인 사업, 프로젝트 등 친환경 경제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으로 국가, 지자체, 공사, 금융기관 등이 추진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하여 발행하는 모든 채권을 포함
- 부채자본시장에 국한된 기준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럽연합, 한국, 일본, 국제표준기구(ISO) 등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함
- 그 중 유럽연합 분류체계가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류체계들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속가능금융 규제 추진 동향 】



※ 자료: 유럽연합, 환경부

3) 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4) CBI: Climate Bond Initiative

## 2. EU

### □ EU 녹색분류체계 개요

- EU 녹색분류체계는 EU 지속가능금융 확대를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별하는 수단임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명확히 구별하여 민간 투자와 경제 활동이 지속가능한 투자로 향하도록 제시
  - 그린 딜은 향후 10년 동안 1조 유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마련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 중

【 EU 녹색분류체계 개요 】

| 구분     | 내용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그린딜 목표에 부합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정의</li> <li>• 특정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 제공</li> <li>• ‘그린워싱’으로부터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li> <li>• 자본흐름을 지속가능한 투자로 유도</li> </ul> |
| 법률적 지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Regulation)</li> </ul>  |
| 경제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Low carbon), 전환(Transition), 활성화(Enabling)</li> </ul>  |
| 주요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대표적인 녹색 분류체계로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크하고 있음</li> <li>• 현재 6개 환경목표 중 2개 목표(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에 집중</li> <li>• 나머지 4개 목표관련 경제활동은 2023년 시행 예정</li> </ul>                     |

### □ 주요내용

- EU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등 6개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4가지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명확한 환경적이고(Green) 지속가능한 (Sustainable) 경제활동으로 인정함
  - 현재 6개 환경 목표 중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에 관해서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나, 나머지 4개 환경 목표는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
  -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경제활동은 ① 6개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 ② 6개 환경 목표 중 어느 것에도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고, ③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 원칙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충족하여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④ EU 기술 전문가 그룹에서 개발한 기술 심사 기준을 준수해야 함

【 EU 녹색분류체계 6대 환경 목표 및 판단기준 】

| 6대 환경 목표                            | 판단기준   |
|-------------------------------------|--|
| 기후변화 완화 (Climate Change Mitigation) | ①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br>②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br>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br>④ 기술적 선별 기준 <sup>5)</sup> 에 부합 |
| 기후변화 적응 (Climate Change Adaptation) |  |
|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
| 오염방지 및 관리                           |  |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  |

※ 자료: 유럽연합

【 EU 녹색분류체계 적용 예시 】



※ 자료: 유럽연합 EU 녹색분류체계 기술부속서

○ EU 녹색분류체계는 유럽표준산업분류(NACE)에 따라 전체 산업 중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 내 포함된 경제활동을 성격에 따라 저탄소활동, 전환활동, 조성활동으로 분류함

- 저탄소활동(Low carbon): 재생에너지 발전, 히트펌프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 기후변화 적응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
- 전환활동(Transition): 시멘트·철강·알루미늄 생산 등 CO<sub>2</sub> 배출량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저탄소 제품으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적인 활동으로 볼 순 없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활동
- 조성활동(Enable):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 건설 등 다른 활동의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 기후변화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은 각 9개, 13개 분야로 분류하고 하위 경제활동도 명시함

5)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SC: 각 환경목표에 상당히 기여하는 경제활동들을 유럽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나열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검토함

【 EU 녹색분류체계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별 활동 】

| 환경목표    | 분야                     | 활동          |
|---------|------------------------|-------------|
| 기후변화 완화 | 1. 산림                  | 4개 하위 경제활동  |
|         | 2. 환경보호와 회복활동          | 1개 하위 경제활동  |
|         | 3. 제조업                 | 17개 하위 경제활동 |
|         | 4. 에너지                 | 25개 하위 경제활동 |
|         | 5. 급수, 하수, 폐기물 관리 및 수리 | 12개 하위 경제활동 |
|         | 6. 수송                  | 17개 하위 경제활동 |
|         | 7. 건설과 부동산             | 7개 하위 경제활동  |
|         | 8.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 2개 하위 경제활동  |
|         | 9.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활동    | 3개 하위 경제활동  |
| 기후변화 적응 | 1. 산림                  | 4개 하위 경제활동  |
|         | 2. 환경보호와 회복활동          | 1개 하위 경제활동  |
|         | 3. 제조업                 | 17개 하위 경제활동 |
|         | 4. 에너지                 | 25개 하위 경제활동 |
|         | 5. 급수, 하수, 폐기물 관리 및 수리 | 12개 하위 경제활동 |
|         | 6. 수송                  | 17개 하위 경제활동 |
|         | 7. 건설과 부동산             | 7개 하위 경제활동  |
|         | 8.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 2개 하위 경제활동  |
|         | 9.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활동    | 3개 하위 경제활동  |
|         | 10. 금융 및 보험 활동         | 2개 하위 경제활동  |
|         | 11. 교육                 | 1개 하위 경제활동  |
|         | 12. 보건 및 사회사업 활동       | 1개 하위 경제활동  |
|         | 13.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 3개 하위 경제활동  |

※ 자료: 유럽연합

□ EU 녹색분류체계 내 발전·에너지 분야

- 발전·에너지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높아 EU 녹색분류체계 수립에 있어 가장 논쟁이 활발했던 분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 포함 여부가 핵심이었음
  - 분류체계 초안에는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천연가스 발전 또한 배제는 하지 않지만 기술적 선별기준이 매우 높아 현실적으로 분류체계 내 미포함
- 2022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단서조항을 제시하여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보완기후위임법률을 공개함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기후위임법률을 발표하여 원자력 발전 및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인정 기준 등을 제시
  - 위 법률이 약 4~6개월 간 EU 의회와 이사회를 거쳐 통과가 된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 에너지 믹스에 대한 EU 내 각국의 입장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원자력 발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낮지만, 분류체계 판단조건 중 ‘다른 환경 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에 따라 원자력 안정성과 핵폐기물로 인한 수자원 오염 및 생물다양성 저해 등으로 포함여부 논쟁 지속
-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JRC<sup>6)</sup> 추가 검토 보고서 및 이에 대한 두 전문가 그룹<sup>7)</sup> 의견은 최종적으로 엄격한 조건과 함께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세 가지 활동을 규정함
  - ① 현존 설비의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이나 향상('40년까지 승인된 설비)
  - ② 4세대 폐쇄형 연료주기 원자력발전(기한 없이 인정)
  - ③ 현존 최고 기술을 사용하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45년까지 설립허가 취득)
- 또한, 집행위는 EU 유라툼 조약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및 설비개선 시 국가 차원의 방사능 폐기물 관리 및 해체를 위한 자원 확보·집행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며, 회원국은 5년마다 관련 내용을 집행위에 보고 필수
- '25년부터는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 안정성을 위한 상당 수준의 기술발전 및 투자 요구
- 천연가스 발전은 화석연료 기반이기 때문에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EU는 과도기적인 전환활동으로 인정함

**【 EU 녹색분류체계 내 천연가스 발전 관련 경제활동 】**

| 경제활동                             | 활동 기준  | 기한             |
|----------------------------------|--|----------------|
| 화석가스 발전                          | 화석가스연료를 활용한 발전시설 건설·운영                               | '30년까지 건축허가 획득 |
| 고효율 열·냉각 및 화석가스 연료 발전            | 화석가스 연료를 이용한 열·냉방 및 발전 복합시설의 건설·정비·운영                |                |
| 효율적인 지역 냉난방 시스템의 화석가스 연료 열·냉방 생산 | 효율적인 지역 냉난방과 연결된 화석 가스 연료를 통해 열·냉방을 생산하는 시설 건설·정비·운영 |                |

자료: 유럽연합

- 또한, 한시적 기한 설정 외의 인정조건도 다수 존재하여 그린워싱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함

6) Joint Research Center

7) Group of Experts on radiation protection and waste management(방사능 보호 및 폐기물 관리 전문가 그룹), 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Environmental and Emerging risks(건강, 환경 및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 그룹)

【 EU 녹색분류체계 내 천연가스 발전 인정기준 】

| 구분            | 인정 조건  |
|---------------|--|
| 기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30년까지 건축 허가를 획득한 설비에 한해서 인정</li> </ul>  |
| 원단위 배출량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270gCO<sub>2</sub>eq/kWh 이하 배출</li> <li>또는 20년 이상의 설비 수명기간 동안 연평균 직접 이산화탄소 배출량 550kgCO<sub>2</sub>eq/kWh이하 배출</li> </ul> |
| 배출량 산정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과정평가(관련 EU지침 및 ISO 기준 활용)</li> </ul>   |
| 제3자 검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된 제3자로부터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재생에너지로 전환 가능성 여부 검증</li> </ul>  |
| 화석연료 발전 대체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체나 액체형 다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을 대체하는 활동</li> <li>신규 설비용량은 대체되는 설비용량의 15% 초과 금지</li> <li>신규 및 재체 설비는 기존 설비 용량 초과 금지</li> </ul>               |
| 재생에너지 사용전환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li> </ul>   |

※ 자료: 유럽연합

□ EU 녹색분류체계 내 제조업 분야

○ 제조업 분야 내 철강·시멘트·알루미늄·화학 산업 등 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해서도 기술적 선별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제활동에 한해서 친환경 경제활동(전환활동)으로 분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고 있음

- 제조업 내 경제활동에 대해 공통적으로 EU-ETS 할당방식인 벤치마크 방식을 활용하여 제품 온실가스 배출 효율 상위 10% 수준의 기술적 선별 기준 마련
-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일지라도 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높은 경제활동에 대해 친환경으로 분류

□ EU 녹색분류체계가 지속가능금융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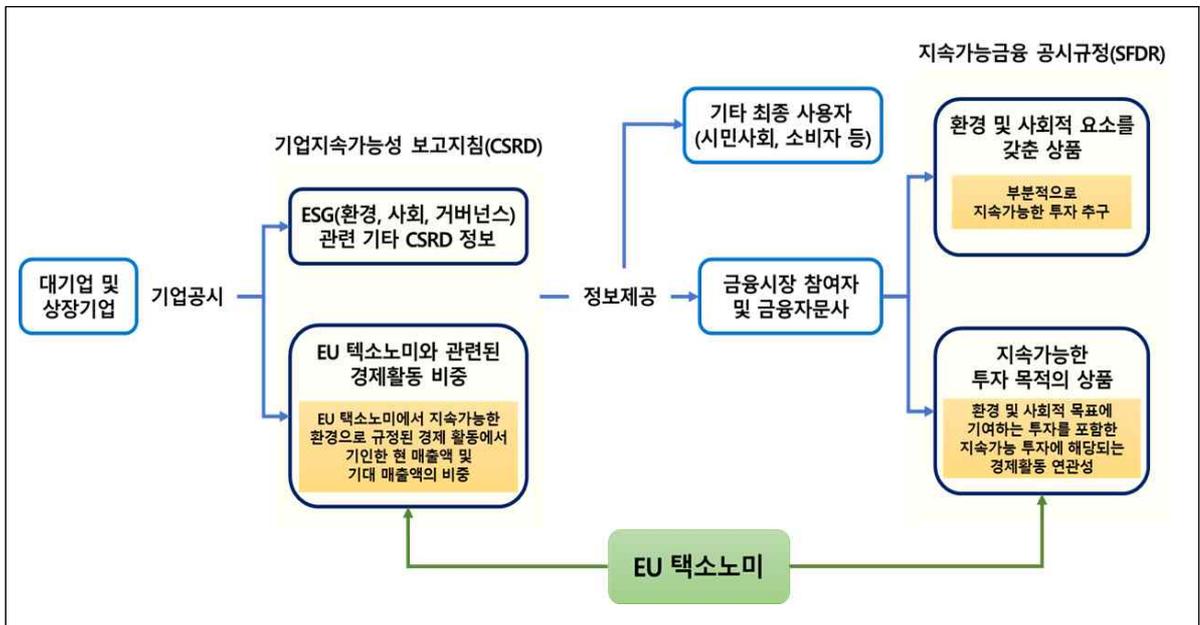
○ 기업 및 금융기관은 EU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sup>8)</sup>,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up>9)</sup> 등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와 연계되어 활용될 예정임

8)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EU 내 금융시장 참가자 및 자문사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리스크(온실가스·화석연료 분야 기업과 연관성·이사회 내 성별 구성 등) 고려 여부를 사전 계약을 통해 공시해야 함

9)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직원 500명 이상,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대규모 기업에 적용하며, 환경/사회 및 노동자/인권 존중/반부패 및 뇌물/이사회 다양성 등을 공시해야 함

- EU 녹색분류체계 규정 8조에 따라 기업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 적용을 받는 기업은 지속가능성 문제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와 동등한 수준으로 공시 필수
- 기업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 적용 대상인 기업(친환경 매출 비중)과 금융기관(친환경 투자 및 금융거래 자산 비중)은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친환경 정보 공시 필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녹색분류체계 규정을 확정하고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발의하였으며, 이사회와 의회를 거쳐 통과된다면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과 함께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

【 EU 녹색분류체계가 지속가능금융에 미치는 영향 】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EU 녹색분류체계의 금융부문 활용

- 2018년 3월, 「지속가능금융 이행계획」<sup>10)</sup>을 시작으로 ‘기후 위임법률<sup>11)</sup>’,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지침<sup>12)</sup>’ 등 지속가능금융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 동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지속가능금융 이행계획은 지속가능한 투자 촉진을 목표로 EU 녹색분류체계 수립,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관투자자 및 자산관리자의 의무 명료화, 지속가능성 공시 및 회계 규정 강화 등 10가지 세부 이행 목표를 포함

10) 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 SFAP

11) EU Taxonomy Climate Delegated Act: 어떤 경제 활동이 EU 환경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12)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 기후 위임법률은 EU 녹색분류체계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분야에 기여하는 경제활동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EU 공통기준 수립
-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지침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 비교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
-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속가능금융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제화를 통해 유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금융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 3. 일본

- 2020년 탄소 집약적인 사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청정 전환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의사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환 금융 지침」<sup>13)</sup> 수립함
  - 전환금융은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기업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금융임
- 「전환 금융 지침」은 국제자본시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녹색채권원칙의 기본 공시요소를 바탕으로 자금조달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전환 금융 지침은 자산에 대한 분류(A형: Asset)와 기업에 대한 분류(C형: Corporate entities 또는 Companies)로 구분
  - A형: 천연가스 발전, 석탄화력 발전, 천연가스 발전,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
  - C형: 전력회사,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 개발자, 시멘트, 철강, 화학, 펄프 등
- 다만, 일본 전환 금융 지침은 탄소 집약적인 프로젝트나 고탄소 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EU 녹색분류체계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과는 다른 성격을 보임
  - 법적인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아 지침의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법령 상 처벌은 없음

### 4. 미국

- 최근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21년 비재무적 정보 공시관련 법안인 「ESG 공시 및 단순화 법안」이 미국 하원 의회를 통과한 후,

13) Transition Finance Guidance

올해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변화 관련 공시 규정」 초안을 발표함

- 해당 규정은 미국 증권거래소 내 상장법인에 대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TCFD<sup>14)</sup> 프레임워크와 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수립
- 주요 공시 내용으로는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 ▲사업 및 지출에 대한 기후 관련 영향 및 이에 대한 재무적 추정, ▲Scope 1, 2, 3 배출량<sup>15)</sup>, ▲기후 관련 목표 및 전환계획 등
-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금융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현재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5. 국제표준기구의 녹색용자 분류체계<sup>16)</sup>

- ISO 14000 시리즈를 통해 환경관리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공해온 국제표준기구(ISO)는 분류체계 표준(ISO 14030-3)을 개발 중임
  - 녹색 용자의 원칙, 요건 및 지침, 적격 프로젝트 및 활동의 기준과 배제 기준 규정 예정
- EU 녹색분류체계 내용과 연계되며 특히, EU 녹색분류체계의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의 주요 내용을 차용함

14)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15) 온실가스 배출원 분류: Scope 1(직접배출), Scope 2(간접배출), Scope 3(기타 간접배출)

16) 산업연구원(2020), 산업경제분석 “그린뉴딜의 기준, 녹색분류체계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 III.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 개요

- 환경부는 지난 4월에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0조 4항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1년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을 공개함
  -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0.12월)의 후속 조치로 제정되어 2023년부터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본격 활용될 것으로 예상
  - EU 녹색분류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수립되었으며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설계하되, 유관 법과 지침, 인증기준 등은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국내 산업계 및 금융기관에 친환경 경제활동 관련 기준을 제시

□ 주요 내용

-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 및 기준을 제공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자금이 친환경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의 유입을 목적으로 함
  - EU와 달리 법적인 강제성을 띄지 않는 가이드라인 수준
- EU 녹색분류체계와 유사하게 6대 환경 목표와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함
  - 6대 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원칙: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최소한의 보호장치
- 경제활동은 부문, 유형, 분야별로 구분되며 총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됨
  - 탄소중립 사회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부문’ 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인 ‘전환부문’ 으로 구성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구조 】**

| 구분      |   | 비고                                       |
|---------|---|--|
| 절(부문)   | 녹색부문, 전환부문                                  | •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 지향단계 분류                    |
| 조(유형)   |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 ④순환경제, ⑤오염, ⑥생물다양성  | • 6대 환경목표를 기준으로 분류                       |
| 항(분야)   | 산업, 발전·에너지, 수송, 도시·건물, 농업, 이산화탄소 포집, 연구개발 등 | • 유형 내 공통된 특징을 갖는 것끼리 묶은 것으로, 14개 분야로 구성 |
| 호(경제활동) | 69개 경제활동                                    | •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 목(판단기준) | ①활동기준, ②인정기준, ③배제기준, ④보호기준                  | • 최종적으로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기 위한 판단기준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 】

| 경제활동 | 내용  |
|------|---|
| 녹색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목표 분야에 기여하는 64개 경제활동을 명시</li> <li>•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및 운영, 재생에너지 생산 등의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경제활동 포함</li> <li>• 철강·시멘트·유기화학물질 제조 등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활동에 기술적 선별기준(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을 충족하는 활동 포함</li> <li>• 고탄소 배출 경제활동에 대해 배출권거래제의 벤치마크(온실가스 배출효율 상위 20%)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기준을 제시</li> </ul> |
| 전환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단서조항과 함께 중소기업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설비, 장비, 시스템 등 개선), 액화천연가스(LNG)와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액화천연가스(LNG)와 혼합가스 기반 수소(블루수소) 생산,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운송 등 포함</li> <li>•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데 과도기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제시된 경제활동을 한시적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li> </ul>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발전·에너지 분야

○ 분류체계 수립 당시 활발하게 논쟁이 되었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 중 천연가스 발전만을 ‘전환부문’에 한시적으로 포함함

- 원자력 발전은 현재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되었으나 차기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포함될 가능성 있음
-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경제활동의 경우, 아래 두 가지의 단서조항과 함께 액화천연가스 및 혼합가스 기반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액화천연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동 포함

- ①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sub>2</sub>eq/kWh이내(발전량, 설계명세서 기준)에 해당하는가?
- ② 설계 수명 기간(design lifetime) 동안 평균 250g CO<sub>2</sub>eq/kWh을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 한국형 녹색 천연가스 관련 경제활동 및 인정기준 】

| 경제활동   | 인정기준  |
|--|---|
| 액화천연가스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온실가스 배출량 340g CO <sub>2</sub> eq/kWh이하)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LNG) 또는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br>* 혼합가스: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부생가스, 액화천연가스(LNG)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한 가스<br>※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개발 (무탄소 혼소, CCS 등) 수준 등을 감안하여 '30~35년까지 인정 |
| 액화천연가스 기반 수소 제조  |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br>※ '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 자료: 환경부

□ 적용방안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녹색프로젝트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민간·공공 자본 유치를 유도할 수 있음
  - 기업: 전체 자산 중 친환경 자산 비율을 공개 가능
  - 금융기관: 개별 자산, 프로젝트, 기업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녹색채권,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금융상품별로 전체 금융 규모 대비 친환경 금융상품 비중 정보 공개 가능
- 향후 본 가이드라인은 국내 정책, 국제 동향, 기술 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본격 적용에 앞서 시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유관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IV. 녹색분류체계 관련 주요뉴스

- EU, 원자력·천연가스 발전 '녹색'으로 분류, 연합뉴스 2022/01/22
  - 유럽연합(EU)이 논란 끝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함
  
- 스웨덴 등 4개국, EU에 천연가스 '녹색'분류에서 제외 촉구, 매일경제 2022/02/02
  -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4개국이 유럽연합(EU)에 천연가스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분류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함
  - 4개국은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의 경우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100gCO<sub>2</sub>eq미만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녹색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이번에 발표되는 규정 확정안에 대해서는 27개 회원국이나 EU 의회가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발표, 법률신문 2022/03/25
  -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 발전은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음
  
- 유럽집행위 전문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친환경이 아니다’”, Environmentanlyst, 2022/04/06
  - 유럽 집행위원회 한 전문가는 EU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원전과 천연가스는 친환경이 아니며, 이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밝힘
  
- 법조계 그룹은 유럽연합에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철회 요구, 로이터 2022/03/16
  -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천연가스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기후위임법률 철회를 촉구함
  - 기후위임법률은 올 7월에 통과여부를 결정하고 EU 27개국 중 20개국에서 거절되면 통과되지 못하며 일부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음

**<참고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세계경제 포커스 2021.5.25.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환경부 (20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환경부 (202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산업연구원 (2020), 그린뉴딜의 기준, 녹색분류체계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European Commission, (2020), Taxonomy report: Technical Annex

European Commission, (2020),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OECD (2017), Investing in Climate, Investing in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World Bank (2020), Developing a national green taxonomy, pp. 15-16

**<참고사이트>**

유럽연합 <https://ec.europa.eu/sustainable-finance-taxonomy/>

EU 녹색분류체계 <https://eu-taxonomy.info/>

---

## 글로벌 에너지 동향 이슈 보고서

- 발행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글로벌협력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Tel. 02-3469-8400 Fax. 02-555-2430  
[www.ketep.re.kr](http://www.ketep.re.kr)
- 발행일 | 2022년 4월
- 집필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김봉주, 이한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본 글로벌 에너지 동향 이슈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연구진 또는 집필자의 개인 견해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